

【 7 】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7. 5. .
제출자 : 양주시장

■ 제안이유

- 「양주시시민제안제도운영규정」과 「양주시공무원제안규칙」을 통합 운영하고자 함
- 행정에 대한 시민 및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규정(2006. 6. 4) 및 시행규칙(2006. 6. 5)」이 전부 개정되고 「공무원제안규정(2006. 7. 1) 및 시행규칙(2006. 7. 1)」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에 대한 시민 및 공무원의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안의 범위·대상을 확대하고, 제안의 운영절차를 효율화하여 제안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제안의 범위·대상 확대(안 제3조 내지 제5조)

- 제안의 범위를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확대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도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도 제안가능(벤치마킹 활성화)
- 자신의 개선아이디어를 실제업무에 적용하여 성과가 있는 경우 실시 제안으로 제출 가능
-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3인 이상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운영개선(안 제10조)

- 창안등급으로는 채택하기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을 실무위원회에서 우수제안으로 의결 하여 기념품을

지급토록 규정함

-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다. 제안의 처리절차 개선(안 제13조 · 제15조 및 제24조 · 제26조)

- 제출된 제안은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실시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불채택 통지 시 15일 이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채택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함
-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3년간,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2년간 관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채택제안은 실시부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창안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함

라.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 확대(안 제18조 내지 제20조)

- 공동제안에 대한 인사상 특전 및 실적가점 부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 우수제안을 제출한자에 대하여 부상금 지급 확대 및 노력 제안상을 신설하여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워도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에 대해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함
- 공동으로 제안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수립·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범위 규정(안 제23조)

- 직무와 관련이 있는 직무 발명·고안·디자인의 경우에만 그 권리를 승계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유 발명 등은 특허법 등이 정하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토록 규정함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라 함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시 소재 학교 및 기업체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제안"이라 함은 시민 또는 공무원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성이 이와 유사한 것
 -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 바.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3.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공모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시민 및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채택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7.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도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출) ① 시민과 시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접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 된 것이 우선 한다.

③ 제3조제2호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 제8조(보완)** ①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흄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등

-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 업무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과장으로 구성 운영한다.
 ③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

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심사위원회에 부의 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채택제안의 실시여부 심의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노력제안의 선정
5.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심의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주 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제안의 심사

제12조(심사기준 등) ①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 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채택여부의 결정) ①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의견조회 등)** ①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시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 ④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최우수상과 우수상으로 채택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도에 추천할 수 있다.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 제17조(제안의 등급)**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②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표창을 수여 하며, 「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③창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8조(인사상 특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 등급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인사상 특전 및 가점 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최우수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 제안자 1인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장려상 이상의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 제19조(부상금의 지급)** ①시장은 창안등급 채택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 ②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에 대한 심사위원은 공모제안 모집부서에서 별도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④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 심사결과 창의성이 다소 미흡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 의결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기념품을 지급한다.
- ⑤제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 제20조(상여금 지급)** ①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 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 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 ②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1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2조(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장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

제23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7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24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 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소관 실·과·소 | | 기획감사담당관실 |
|-------------|------|----------------|
| 임 안 자 | 담당과장 | 백 윤 기 |
| | 담당주사 | 이 윤 뮤 |
| | 담당자 | 김지현(☎820-2053) |

[별표 1]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

| 구 分 | 창안등급 | 인사특전 | 실적가점 | 비 고 |
|----------------|-------|----------------------|------|-----|
| 업무 관련 창안 채택 | 최우수상 | 특별승급 1호봉 | 1 | |
| | 우 수 상 |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 부여 | 0.5 | |
| | 장 려 상 | | 0.3 | |

【비고】 공동체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최우수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체안자 1인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장려상 이상의 공동체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별표 2]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

| 시상등급 | 시 상 내 역 | |
|-------|-------------|-----------------------------------|
| | 부 상 금 | 지 급 기 준 |
| 최우수상 | 100만원 | 90점 이상 |
| 우 수 상 | 50만원 | 80점 이상 |
| 장 려 상 | 30만원 | 70점 이상 |
| 노력제안 | 10만원상당의 기념품 |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안 |

[비고]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되며,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 미만
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 발췌

【국가공무원법】

- 제53조(제안제도)** ①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 ②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국가예산의 절약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의4(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3. 제53조의 제안의 채택 · 시행으로 국가예산의 절감 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 ②특별승진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 제78조(제안제도)** ①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 ②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절약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의3(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3. 제78조의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예산의 절감 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국민제안규정】 : 제정 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 제정 2006. 6. 5 행정자치부령 제33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제안규정】 : 전부개정 2006. 6. 15 대통령령 제1952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 전부개정 2006. 6. 15 행정자치부령 제33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시민제안제도운영규정】 : 제정 2003. 10. 19 훈령 제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정 전반에 관한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개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민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시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예산 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창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시주관부서”라 함은 창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제안의 대상) ①제안은 일반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②일반제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생활편의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 개선
2.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 방안
3. 시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
5. 기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③지정제안이라 함은 매년 시에서 과제를 미리 선정해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한 것
3. 공무원제안제도·주민제안제도로 기첩수 또는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양주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5.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6.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의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아니한 것
7.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8. 시정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등과 관련된 사항

9. 기타 양주시시민체안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제2장 제출 및 접수

제6조(제안서의 제출) ①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스스로 선정한다.

②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또는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 할 수 있다.

제7조(제출 준비자에 대한 지원) 담당관, 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시정 전반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제출 준비자에 대하여는 각종 자료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심 사

제8조(제안서의 접수)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접수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시민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안등급 결정
2. 채택된 제안의 실시·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민체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제안예비심사위원회) ①주민체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비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이하 “예비심사위원회”라 한다)

②예비심사위원회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담당관 및 과소장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도로과장으로 한다.

③예비심사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의견조회) ①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의견을 조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심사기준) 제출된 제안은 창의성·경제성·효율성·실용성·주민편익 등을 착안사항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심사 결정한다

1. 심사착안사항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에 의하고 시상등급은 별표 2에 의한다.
2.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2이상 제출된 때에는 접수순서에 의한다.

제13조(심사방법) ①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는 서면심사로 하되, 필요시 실무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예비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위원별로 심사표를 작성한 후 종합평점 결과에 따라 확정한다.

제14조(채택등급) 제안의 채택등급은 최우수·우수·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심사시기) 위원회는 시민제안에 대하여 연 1회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시상 및 창안의 사후관리

제16조(시상등급 및 부상금) ①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부상금을 지급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시장표창을 한다.

②참가자에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채택자에 대한 시장표창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로 가름할 수 있다.

제17조(수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수상자에 대하여는 시정시찰·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②수상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하여 수상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창안의 사후관리) ①창안은 실무주관부서에 통보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실시주관부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창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시주관부서는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④실시주관부서는 매년 2월까지 전년도의 실시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획감사담당관은 매년 실시결과를 평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도록 해야 한다.

⑥ 실시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⑦ 채택된 제안은 5년간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9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주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홍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창안의 실시상황은 보도 또는 언론 매체, 기타 홍보물을 통하여 홍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양주군군민제안제도운영규정에 의한 행위 등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양주시공무원제안규칙】 : 제정 2003. 10. 19 규칙 제2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양양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시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지정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읍·면·동장(실과소장 포함)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 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 직무보상이 확정된 것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성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시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부서) 기획감사담당관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의견조회) ①기획감사담당관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또는 자료제출의

의뢰를 받은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제안의 모집 및 제출

제9조(제안의 모집) 제안 모집은 연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당해 담당관·과장·사업소장 또는 읍·면·동장이 이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3조(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 결과 동점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실험·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심사의 결정)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 금액 및 현저한 행정항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3장 시 상

제17조(창안의 등급)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8조(창안의 추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도에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인사상 특전)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1. 특별상 : 특별승급
2. 우수상 및 우량상 : 희망부서 전보

제20조(부상) 시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특별상은 1창안당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2. 우수상은 1창안당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3. 우량상은 1창안당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제4장 제안의 실시 및 평가

제21조(창안의 실시)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 추천) 시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 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의 평가) ① 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소속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 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5조(상여금)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대통령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6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양주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에 의한 제안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